

고성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

(의안번호 제3002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5. 9. 26. 김향숙 의원 등 6인
나. 회 부 일 자 : 2025. 10. 2.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25. 10. 20. 의회운영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설명자: 김향숙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고성군의회 의정 정보를 누리집, 소셜미디어, 각종 홍보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군민에게 투명하게 제공하고, 이를 통해 군민의 의정 이해와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,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.

나. 주요내용

1)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
- 목적: 의정 정보 전달 및 군민 이해·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조례 제정
- 정의: “의정 홍보”, “소셜미디어”, “의정홍보물” 등 용어 정의

2) 의장의 책무(안 제3조)

- 정보 공개와 공평한 제공 원칙 준수
- 군민 참여 보장 및 알 권리 증진
- 사회통합·양성평등 의식 제고, 사회적 약자 대상 홍보활동 강조
- 관련 법령(공직선거법, 정치자금법 등) 준수

3) 홍보사업(안 제4조)

- 업무: 누리집, 소셜미디어, 인터넷방송 운영, 의정 홍보영상, 소식지 제작·배포, 군민 소통·참여를 위한 기념품 제작·제공

4) 홍보의 내용 및 운영(안 제5조~제10조)

- 홍보의 내용
 - 군민과의 소통 강화 및 참여 활성화
 - 의정 소식 및 군민에게 유익한 정보 제공
- 홍보 활동
 - 누리집 설치 및 운영, 소셜미디어 운영, 홍보영상 제작, 인터넷방송 설치·운영, 의정 소식지의 발행

5) 자료 관리 및 게시물 관리(안 제11조)

- 최신 정보 게시 및 유지·관리
-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 기준 명시
- 관련 법령 준수 의무 부여

6) 기념품 제공(안 제12조)

- 의례적 수준의 기념품 제공 가능
- 예산 범위 내 제공, 제공 기준은 의장이 정함

다. 참고사항

1) 관계법령

-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자치법」

2)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3)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5-47호

- 예고기간: 2025. 9. 26.(금) ~ 10. 1.(수)[5일간]
-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: 의견 없음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: 조래훈)

- 본 제정조례안은 고성군의회회의 의정 정보를 누리집, 소셜미디어, 각종 홍보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의정 이해와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, 주요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

- 의장의 책무(안 제3조)

- 정보공개 원칙 및 법령 준수 의무 명확히 규정 → 공직선거법 등 위반 소지 차단 가능
- 사회적 약자·양성평등 강조 부분은 포용적 의정활동 방향에 부합

- 홍보사업(안 제4조)

- 현행 의회 누리집, 홍보영상 중심에서 소식지, 소셜미디어, 생방송 중심 홍보로 확장
- 기념품 제공 규정 신설로 군민 참여 유도 및 홍보 효과 제고 기대

- 자료관리(안 제11조)

- 게시물 삭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운영의 객관성과 법적 안전성 확보
- 개인정보, 저작권, 명예훼손 등 분쟁 예방에 기여

- 기념품 제공(안 제12조)

- 「공직선거법」상 기부행위 제한에 저촉되지 않도록 예산 범위 내 의례 수준 명시
- 구체적 기준을 의장이 정하도록 위임 → 집행 탄력성 확보

○ 적정성 및 타당성

- 최근 지방의회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군민이 의정활동을 접할 수 있는 공식 채널은 제한적인 실정임
- 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군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의회 차원의 체계적인 홍보기반 정립이 필수적임
- 특히 의정 소식지와 인터넷방송 시스템 구축은 의회의 개방성과 군민 접근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

○ 종합검토 의견

- 고성군의회 의정정보 공개 및 군민과의 소통 기반을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
-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와의 저촉 여부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5. 10. 20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